

제3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4.9.18(목) 16:00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 
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#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운용중인 조례를 규제개혁추진단 권고사항 반영과 농업인회관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으로 농업인회관 시설사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가.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조문 정비 : 제7조제1항

나.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권고한 사항 삭제 : 제7조제2항제3호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운용중인 조례를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농업인회관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